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23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이광희 · 김 윤 · 이주희
채현일 · 박지원 · 최기상
이상식 · 조정식 · 서영석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차의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횡단보도로부터”를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로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